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농촌간호학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건강 증진 분야 연구 발굴 및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2. 본 협약의 내용은 각 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기관은 본 협약을 근거로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손해배상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1.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주제 발굴 및 수행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운영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4. 공동 이슈 또는 연구 결과 등에 대한 학술행사 공동 개최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제4조 비용

본 업무협약에 의한 협력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 보안

1.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양 기관은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가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6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협약 해지

1.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정하며, 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다.
2.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각 원문은 모두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3. 협약 기간 중 협력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 기타

양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이 협정서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0년 12월 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한국농촌간호학회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원장 조인성

조인성

한국농촌간호학회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회장 전경자

전경자